

# 마하생태관광지(본동지구)

##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9.  
제안자 : 평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국민의 여가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하생태관광지 및 생태민박동, 동강스카이라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2. 시설개요

- 개관일 : 생태주택관(2006. 3.), 민박동(2008. 3.), 스카이라인(2012. 6.)
- 위치 : 미탄면 마하리 323 외 3필지(마하길 42-5)
- 시설규모(생태주택관 및 민박동)
  - 부지면적 : 4,000m<sup>2</sup>
  - 연면적 : 749.66m<sup>2</sup> (주택관 435.52 / 민박동 314.14)
  - 건축면적 : 748.35m<sup>2</sup> (주택관 403.12 / 민박동 345.23)
  - 층수(지상/지하) 및 동수 : 지하1, 지상1층 2동
- 주요시설
  - 생태주택관 : 농특산물판매장, 세미나실, 휴게실, 식당 등
  - 민박동 : 4가구
  - 스카이라인 : 스카이라인 L=200m, 점프대 H=11m 등
- 부대시설
  - 데크산책로 L=70m, 주차장, 가로등, 짚라인 경관조명 등

### 3. 위탁개요

- 위탁자 : 평창군
- 수탁자 : 공개모집 예정(지역제한 미탄면)
- 위탁기간 : 2023. 7. 1.부터
- 추진절차

- ① (추진계획수립) 수탁자 선정절차 결정
- ② (공개모집) 1차 공고 시, 대상이 없는 경우 재공고
- ③ (수탁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)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
- ④ (수탁기관 선정) 수탁적격자 평가, 결과보고, 수탁자 선정 공고
- ⑤ (관광사업 지위승계,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) 협약서 작성, 위탁기간 3년이내, 공증  
\*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, 수탁기관·단체명, 위탁대상 재산 및 그 내용,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- ⑥ (시설 인수·인계 및 사후 관리) 인수·인계서 작성, 사후 지도·감독

### 4. 위탁사유

-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1년 시설관리 공단 위탁방안을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, 위탁요건 부족(수지비율 34.4%)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였음
- 개관부터 2020년까지 민간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됨에 따라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민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.

### 5. 기대효과

- 민간 위탁의 경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, 민원 최소화 및 즉각적인 대응,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###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### 제4조(대상사무)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
### 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

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
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

### 제7조(의회의 동의)

-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

### 제7조(위탁관리)

-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라 법인·개인 또는 단체에 관광지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### 제8조(수탁자의 선정)

-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.